<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DIYA COFFE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01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년 07월 26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년 02월 11일

www.ediya.com

이디야커피

정 보 공 개 서

(주)이디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이디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 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 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543-6467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543-719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개발담당부서 (02-6048-4138)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8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3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4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23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8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40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44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4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2.04.02		2002.04.01	문창기, 조규동	02-543-6467	02-543-7191
	법인등록번호	110111-2487753		사업자등록번호	107-86-1630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원)	문창기	이디야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창기, 조규동	02-543-6467	02-543-7191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원)	조규동	이디야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창기, 조규동	02-543-6467	02-543-7191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문승환	이디야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창기, 조규동	02-543-6467	02-543-7191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이득홍	이디야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문창기, 조규동	02-543-6467	02-543-719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이디야커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이디야커피	
상 호	이디야커피 ( )점	
상표(서비스표)	EDIYA COFFEE	상표 등록번호 : 45-0034995-0000
광고 /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85,530,384	98,359,069	87,171,315	277,806,749	10,036,009	6,274,825
2023년	173,111,978	85,926,077	87,185,901	275,566,021	8,224,020	3,409,491
2024년	172,452,001	102,582,856	69,869,145	241,975,063	9,678,449	4,516,884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문창기	대표이사	2004.04.01~현재	(주)이디야 대표이사 회장	경영총괄
	조규동	대표이사	2025.01.02~현재	(주)이디야 대표이사	경영총괄
	문승환	이사	2024.04.01.~현재	(주)이디야 이사	이사
	이득홍	감사	2025.04.21~현재	(주)이디야 감사	감사

※ 상기 표에서 '현재'의 시점은 2025년 04월 25일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1	42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EDIYA COFFEE (상표/서비스)	가맹점 영업활동	2010.04.22. 출원 2011.06.07. 등록	45-2010-0001679 45-0034995-0000	(주)이디야	2031.06.07.
EDIYA COFFEE 이디야커피 (상표/서비스)	가맹점 영업활동	2013.02.06. 출원 2014.01.09. 등록	45-2013-0000641 45-0047701-0000	(주)이디야	2034.01.19.
EDIYA ESPRESSO COFFEE (상표/서비스)	가맹점 영업활동	2013.02.06. 출원 2014.01.09. 등록	41-2001-0024452 41-0086984-0000	(주)이디야	2033-06-0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이디야커피] 가맹사업 현황

1. [이디야커피]를 시작한 날 : 2001년 08월 17일

2. [이디야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가 철	2001.08.17.~2004.05.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문창기	2004.05.20.~2024.0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2016.03.21~현재)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문창기, 김상수	2024.04.01.~2025.0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2016.03.21~현재)
(주)이디야	이디야커피	문창기, 조규동	2025.01.02.~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논현동) (2016.03.21~현재)

3. [이디야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이디야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차, 베이커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이디야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019**	**3,005**	**14**	**2,821**	**2,805**	**16**	**2,581**	**2,562**	**19**
서울	697	688	9	602	592	10	523	510	13
부산	164	162	2	152	150	2	136	134	2
대구	102	102		105	105		105	105	
인천	193	193		176	176		138	138	
광주	78	78		74	74		68	68	
대전	60	60		59	59		55	55	
울산	90	90		92	92		90	90	
경기	800	798	2	728	726	2	644	642	2
세종	23	23		20	20		19	19	
강원	129	129		139	139		145	145	
충북	95	95		99	99		94	94	
충남	95	95		97	97		96	96	
전북	104	104		103	102	1	93	92	1
전남	93	93		88	88		89	89	
경북	130	129	1	130	129	1	144	143	1
경남	146	146		138	138		124	124	
제주	20	20		19	19		18	18	

5. 바로 전 3년간 [이디야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3,005	196	-	196	237	3,005
2023	3,005	143		343	244	2,805
2024	2,805	126		369	187	2,562

※ 위 표의 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가 타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 가맹본부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된 계약종료를 뜻하며,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해지 숫자는 '0' 입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요청시 전자우편으로 제공합니다.

6. [이디야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이디야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환산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은 POS를 근거로 한 추정금액이므로 반드시 상한과 하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2,562	194,818	6,330	2,076,072	440,132	14,593	606	2,494
서울	510	211,174	8,722	1,373,727	440,132	34,390	1,254	501
부산	134	168,888	5,104	2,076,072	81,136	14,593	728	132
대구	105	181,306	4,629	478,250	37,222	32,704	708	99
인천	138	177,477	6,859	732,788	26,992	22,322	633	135
광주	68	167,843	4,573	527,125	128,948	32,099	955	66
대전	55	177,563	5,500	365,579	24,363	59,758	2,101	54
울산	90	188,888	5,199	983,940	165,663	23,916	652	87
경기	642	191,400	7,121	1,115,192	166,570	15,087	1,509	623
세종	19	197,500	6,859	429,837	14,298	76,132	2,278	19
강원	145	203,484	5,955	738,718	27,182	26,872	606	140
충북	94	193,582	5,564	420,521	20,016	44,553	855	92
충남	96	253,335	6,989	1,929,031	44,049	83,583	1,439	95
전북	92	182,853	4,775	588,937	14,323	27,334	1,516	91
전남	89	219,775	5,165	483,921	49,021	47,152	999	85
경북	143	193,332	5,457	761,357	130,282	34,312	828	135
경남	124	172,242	4,732	386,564	31,891	30,029	812	122
제주	18	165,781	5,715	272,468	28,283	26,849	2,128	18

※ 당사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오픈한 매장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6개월 이상 영업매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수 기준(180일 이상)이 아닌 운영개월수 6개월에 해당되는 영역(2024년 7월 중 오픈 매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운영개월수 6개월 미만 54개소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POS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 8개 가맹점과 6개월 이상 휴업한 6개소(김포구래아크라시티점, 안산중앙역점, 하남광암동점, 부산유엔공원점, 구미옥계동점, 대구연경점)는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2,562개가 아닌 실제 2,49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시장상황, 가맹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의 장래 수입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이디야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이디야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562	2,59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이디야커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3,264,895	**(비공개)**	-	
광고판촉비	**(비공개)**	13,264,895	**(비공개)**	-	

※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일부 광고판촉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1]을 참고하십시오.

※ 위 금액에는 이디야커피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이디야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가맹금 납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 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1,820만원 (부가세 포함)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소요

※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IV-1-3)]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위 표의 보험인과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 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건은 보험계약자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가맹희망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피보험자인 가맹사업자가 보험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피보험자인 가맹점사업자가 보험 기간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보험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예치가맹금 반환요구를 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면 확인 시 보상 처리 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이디야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1],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증권 교부로 대체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증권 교부로 대체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3,2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개점 전 : 기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 대가 등)의 비용 또는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그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 반환됨) - 개점 후 :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입비	**2,200**			
교육비	**3,300**			
매뉴얼/경영지도비/오픈교육지원 (가맹점 오픈 시 제공)	**7,7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철거공사, 냉·난방기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등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가맹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채무 미이행, 가맹본부 공급 물품 파손 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발생 -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 이행여부 완료 확인 후 즉시 잔존채무액,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신용으로 구입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귀하는 아래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이 당사에 직접 지급 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8,200
최초 가맹금	13,2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 66㎡(20평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table>
<tr><th>구분</th><th>지급대상</th><th>금액</th><th>면적(3.3㎡)
당 금액</th><th>지급 기한</th><th>반환조건</th><th>비고</th></tr>
<tr><td>총계</td><td></td><td>113,650</td><td>-</td><td></td><td></td><td></td></tr>
<tr><td>기획 관리비</td><td>가맹본부</td><td>4,400</td><td>220</td><td>-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잔금 50%
(준공 1일 후)</td><td rowspan="2">공사 전
계약취소</td><td>최소 20평(4,400)
최대 40평(8,800)</td></tr>
<tr><td>인테리어</td><td>협력업체</td><td>41,800</td><td>2,090</td><td>-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중도금 40% (협의)
- 잔금 10%
(준공 1일 후)</td><td>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
<tr><td>외부사인</td><td>가맹본부</td><td>4,840</td><td>-</td><td rowspan="3">-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잔금 50%
(준공 1일 후)</td><td rowspan="4">주문 전
계약취소</td><td>판타입 기준
(전면 간판 1조 / 5m² 기준)</td></tr>
<tr><td>의탁자</td><td>가맹본부</td><td>9,350</td><td>468</td><td>점포 상황, 의탁자 수량 및 사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td></tr>
<tr><td>제작집기</td><td>가맹본부</td><td>3,760</td><td>-</td><td rowspan="2">점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td></tr>
<tr><td>기기장비</td><td>가맹본부</td><td>38,500</td><td>1,925</td></tr>
<tr><td>오픈홍보비</td><td>가맹본부</td><td>2,200</td><td>-</td><td>계약 체결 후
7일 이내</td><td>시행 전</td><td>면적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됨</td></tr>
<tr><td>초도상품</td><td>가맹본부</td><td>8,800</td><td>-</td><td>입고 후 2일 이내</td><td>입고 전
계약취소</td><td>오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
<tr><td>배상책임보험</td><td>보험회사</td><td>해당
보험료</td><td>-</td><td></td><td></td><td></td></tr>
</table>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귀하의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내부옵션공사, 냉난방기공사, 철거, 화장실공사, 소방공사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적당 금액'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된 것으로서,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 관리비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점 실·내외 인테리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제공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기획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획관리비의 산정기준은 대상 면적이 66㎡ 미만인 경우에도 66㎡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상면적이 132㎡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32㎡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또는 일부 기기장비의 시공 및 공급을 가맹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공 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 관리비, 감리 비용으로 하기 표에 명시된 금액을 착공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준 : 66㎡(20평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800**	-			
기획 관리비	가맹본부	4,400	220	-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잔금 50% (준공 1일 후)	공사 전 계약취소	최소 20평(4,400) 최대 40평(8,800)
감리비	가맹본부	4,400	220			최소 20평(4,400) 최대 40평(8,800)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의 입지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 선정의 최종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귀하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귀하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귀하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귀하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귀하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귀하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귀하의 최종 결정 ※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대한 책임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개점 지연으로 인한 가맹본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적격심사요건을 충족할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필요로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디야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은 매장 규모 및 메뉴 등에 따라서 물품 내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별도 제시하는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판촉비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지급대상</th><th>금액</th><th>지급기한</th><th>반환조건</th><th>반환될 수 없는 사유</th><th>비고</th></tr>
<tr><td colspan="2">로열티
(상호,상표 사용료)</td><td>가맹본부</td><td>월 275</td><td>매월 말일</td><td>-</td><td>로열티는 상호, 상표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후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td><td></td></tr>
<tr><td colspan="2">교육훈련비</td><td>가맹본부</td><td>실비(재료비 상당)</td><td>교육 실시 전</td><td>교육 개시 전</td><td>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td><td></td></tr>
<tr><td rowspan="4">점포 환경 개선 비용</td><td rowspan="2">가맹 본부가 중개한 업체</td><td rowspan="2">가맹본부</td><td>기획 관리비 3.3㎡당 220천원</td><td rowspan="2">-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잔금 50% (준공1일후)</td><td>공사 전 계약취소</td><td>- 착공 후 계약금 반환 불가
- 준공 후 잔금 반환 불가</td><td rowspan="4">가맹본부의 비용분담에 관해서는 [VII-1] 참고</td></tr>
<tr><td>외부사인</td><td>주문 전 계약취소</td><td>주문 후 반환 불가</td></tr>
<tr><td>가맹 본부가 중개한 업체</td><td>협력업체</td><td>발생비용</td><td>-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중도금 40% (협의)
- 잔금 10% (준공1일후)</td><td>공사 전 계약취소</td><td>공사 후 반환 불가(중도해지시 기성급 공제 후 반환)</td></tr>
<tr><td rowspan="2">가맹점 사업자 직접 시공</td><td rowspan="2">가맹본부</td><td>기획관리비 3.3㎡당 220천원
감리비 3.3㎡당 220천원</td><td rowspan="2">- 계약금 50% (착공1일전)
- 잔금 50% (준공1일후)</td><td rowspan="2">공사 전 계약취소</td><td rowspan="2">공사 후 반환 불가</td></tr>
<tr><td>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td><td>발생비용</td><td>해당 없음</td><td>해당 없음</td><td>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2">기기장비, 의탁자 교체/보수 비용</td><td>가맹본부 또는 A/S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td><td>발생비용</td><td>교체/보수 업무 개시 전</td><td>교체/보수 전 계약취소</td><td>교체/보수 후 반환 불가</td><td></td></tr>
<tr><td colspan="2">광고/판촉비</td><td>가맹본부</td><td colspan="2">[V-8] 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td><td>광고/판촉 미실시</td><td>광고/판촉 후 반환 불가</td><td></td></tr>
<tr><td colspan="2">지연이자[2)]</td><td>가맹본부</td><td>연 4.6%[3)] (세법규정)</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배상책임보험료</td><td>보험회사</td><td>해당 보험료</td><td>-</td><td>-</td><td>-</td><td>가맹계약서 제 40조</td></tr>
</table>

2)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및 상품대금 지연 시 부담하는 이자.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운영개월수 6개월 미만 54개, pos 미사용 매장 8개, 6개월 이상 휴업한 매장 6개 제외) 2,494개소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말한다"에 근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장관리	- 정기방문(월 1회 이상) - QCS(품질, 위생, 서비스) 점검 - 월 가맹점 매출 및 손익분석 - 매장 전반 위생 상태 점검 - 인테리어•기기 A/S 접수 및 처리 - 상권 및 경쟁점 현황 분석	정기/수시	문의 : 영업팀, 위생안전관리팀
클레임 처리	- 고객 클레임 처리 -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실태 점검	수시	문의 : CS팀, 영업팀
미스테리 슈퍼바이저	- 가맹점 전반 환경, 위생, 서비스 점검 - 가맹본부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확인	정기/수시	문의 : 영업팀
CS 현장 코칭	- 매장 환경, 서비스 실태 점검 - 가맹점 맞춤형 서비스 코칭 진행	정기/수시	문의 : CS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 종료된 후 연장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연장은 갱신, 재계약을 포함하나, 재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가맹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예, 영업지역 내에서의 단순이전이 아닌 새로운 영업지역으로의 이전 등)에는 최초 가맹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귀하가 운영하는 이디야커피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3,30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5,000천원(부가세 없음)과 매뉴얼/경영지도비/오픈교육지원 7,700천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운영하는 이디야커피 운영권을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교육비와 매뉴얼/경영지도비/오픈교육지원 비용은 면제되며,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양도인의 직계존비속 및 2촌 이내의 형제, 자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제외)까지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2)]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간판, 영업표지나 레시피, 기타 제품, 노하우 등의 사용 및 활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와 메뉴판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및 무상대여 품목 등은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문구, 인터넷 상의 브랜드 명칭 사용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
- 영업신고 변경 또는 폐업 증빙 서류

④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당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송 중 해동된 상품, 오배송되거나 상품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a. 구성품 및 증정품 등이 누락된 경우

b. 배송당시의 규격에 미달된 경우

c. 포장박스가 누락· 훼손(포장재 글씨 기입, 파손, MD 포장박스 분실 등)된 경우

d. 박스 단위 출고품의 낱개 상품인 경우

e. 개봉 사용 물품의 경우

f. 냉동·냉장 상품(냉동상품의 경우 배송 중 해동된 상품임을 이유로 하는 반품은 제외)의 경우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이디야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장비・비품/소모품・상품 및 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신제품 출시,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3]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이디야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이디야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4]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별첨 4]에 기재된 모든 제품을 판매해야 함이 원칙이며, 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본사 미 승인 제품 사용, 진열, 판매 시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상품 공급중단 5일 -3회 위반 : 상품 공급중단 10일 -4회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신제품 출시,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레시피 변경 포함)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아래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해당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상품공급 중단 4일 -3회 위반 : 상품공급 중단 10일 -4회 위반 :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이외의 유통채널 고객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에 권장가격 제도 등을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4]와 같습니다. 귀하가 [별첨 4] 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또는 커피 관련 음식료품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이디야커피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설정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구역(지도) 표시
설정기준	1)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제외 2) 주택가, 아파트상권의 경우 주 동선 기준 3) 고립상권의 경우 고립지역만 상권 부여 4)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금매장, 백화점, 할인점,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내 등 특수상권인 경우 별도 상권으로 분리 5) 2)3)항의 경우라도 점포 앞 도로가 왕복4차선 초과하면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지도 상 날인한 영업지역 내에 [이디야커피]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영업권 내의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추가 개점하거나, 기존 가맹점을 폐점한 후 재출점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이디야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이디야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할인점	이마트	아메리카노 스틱 라떼 스틱 커피믹스 스틱 캡슐 커피 홀빈원두 드립백 콤부차 외 유통상품	일반 소매점
	다이소		
	노브랜드		
	홈플러스		
	롯데마트		
	킴스		
	농협 하나로마트		
	세이브존		
일반소매점	장보고마트		
	와마트		
	두꺼비식자재마트		
	MS마트		
창고형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MAXX)		
	코스트코		
체인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에브리데이		
편의점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특수	국군복지단(PX)		
	씨제이프레시웨이		
	코레일유통		
	대한항공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씨제이	https://display.cjonstyle.com/	아메리카노 스틱	온라인 쇼핑몰, 전문몰
	우리홈쇼핑	https://www.lotteimall.com		
	지에스	https://with.gsshop.com/		

	홈앤쇼핑	https://www.hnsmall.com/index.do	라떼 스틱 커피믹스 스틱 캡슐커피 홀빈원두 드립백 콤부차 외 유통상품	
	카페24 (이디야 스토어)	http://ediyastore.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		
	신세계몰	https://www.ssg.com/		
	그립	https://grip.show/		
	11번가	https://www.11st.co.kr/		
	현대홈쇼핑	https://www.hmall.com/		
	카카오 톡딜	https://store.kakao.com/		
	카카오 선물하기	https://gift.kakao.com/home		
	팜아시아 (떠리몰)	https://www.thirtymall.com/		
	인크로스	https://pc.tdeal.kr/		
	컬리	https://www.kurly.com/		
	쿠팡	https://www.coupang.com/		
	지마켓	https://www.gmarket.co.kr/		
	우아한형제들	모바일 배달의민족 앱		
	옥션	https://www.auction.co.kr/		
	알리익스프레스	https://ko.aliexpress.com/		
	토스 쇼핑	모바일 토스 앱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매장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그를 검토하여 승인, 승인불허,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고, 만약 가맹본부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1	7	0	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5	8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이디야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점운영권의 양도가 있은 경우 "최초 계약일"은 최초 양도인의 최초 계약일을 말함).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이디야커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44조 1항
○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제3자로 하여금 제작 또는 인쇄케 한 경우 포함)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으로 불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 제16조 제7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되고 영업지역 내 적정한 점포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44조 제2항 8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기한 변조 및 삭제행위를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44조 제2항 8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는 원료사용, 보관, 진열 판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44조 제2항 8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물질, 혐오물질 투입·혼입 행위 또는 부주의에 의한 유해물질 투입·혼입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필수품목 자점매입행위, 필수품목 외 상품의 규격외 제품 사용행위를 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제품을 진열, 판매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법령상 요구되는 보건증을 미구비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생, 서비스, 제품 품질 관련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 점검 요청을 거부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이디야멤버스 서비스의 스탬프를 부정적립 하는 등 가맹본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상 기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4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44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4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 제정·개정의 경우, 사전 통보 후 수정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규정상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변경필요시	53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계약기간 중 계약 수정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만료일로부터 180일부터 90일사이의 기간 동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식으로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혹은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V-6-2]에 따릅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POS 매출 자료, 투자비 내역, 영업현황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귀하의 양수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 검토에 따른 승인	가맹점사업자가 양도일의 50일 이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승인 시 양도인 양수인간 양수도계약 체결하며, 양수도계약 체결을 전제로 승인 후 15일 내 양수인과 가맹본부간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개발담당부서 (02-6048-4138)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비 3,300천원, 매뉴얼/경영지도비/오픈교육지원비용 7,700천원-부가세포함/계약이행보증금 5,000천원-부가세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도양수를 할 경우, 당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양수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양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당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불승인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양도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대리 경영자가 부담함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이디야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개발담당부서 (02-6048-413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이디야커피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수 제한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 원칙 -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휴업 금지	문의 : 영업팀 (02-543-646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 귀하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휴업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당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을 승인합니다.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환경 및 근무자 위생	담당자 매장 방문 → 위생, 청결상태 등 관리 항목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근무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정기/수시	담당 영업팀, CS팀, 위생안전관리팀
기기장비			
식품 위생			
서비스 및 레시피			
기타(매장 비치 서류 등)			

* 당사는 상기 표에 명시된 영업장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라 시정요구 및 보수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이디야커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경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단위 : %)		분담 절차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전국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비용분담 가능(단,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할 수 있음)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 동의시 전매장 시행)
	증정행사			
	판촉물 제작			
전자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50%	수수료 50%	판매된 상품권(전부 또는 일부)이 매장에 회수 → 매월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정산
	전사 프로모션용 할인 상품권	- 할인 금액 전액 본사부담 - 수수료 50%	수수료 50%	
	전사 프로모션용 무료상품권	- 제품금액(매장 판매가) 전액 본사부담 - 수수료 50%	수수료 50%	
멤버십 서비스	스탬프 적립서비스	아메리카노(L) 원•부재료비 50%	아메리카노(L) 원•부재료비 50%	멤버십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매장에 한함. (단,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시 전체 적용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해당 계약 규정에 따라 분담 (매월 후정산)
	프로모션쿠폰	전액부담	없음	
	개발/유지보수 라이선스/SW/HW	전액부담	없음	
	인앱결제(선물하기 쿠폰, 선불카드)	결제 관련 가맹점 부담 수수료 제외 나머지 전부	사용한 결제액의 1.1%(vat별도)	
	인앱결제(스마트오더)	결제수수료 50%	결제수수료 50%	

※ 가맹본부가 100% 부담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시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제작한 광고디자인(전단지, 책자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판촉활동의 내용,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 예방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촉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연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사업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교부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0	
점포개발	- 입지선정(주변시세 파악, 건물등기, 토지대장 등)	필요시 실시	
상권조사	- 입점 후보지 상권분석(주거형태 및 오피스, 유동인구, 동종업종 등)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보증보험증권 발행	D-35~34	
매장 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4~28	
가맹금 납입	- 가맹금 납입	D-33~26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관련 계약 체결 - 공사 실시	D-27~5	
개점 전 교육	- 메뉴제조 - 기기장비 조작 - POS조작 - 커피이론 - 실전 모의 훈련 (현장실습) - 노무 - 서비스 및 위생 - 드림팩토리 견학	D-20~12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원 및 점주 체크 - 가오픈	D-4~1	
개점	- 개점 행사 및 영업 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

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에 기재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본부가 중개한 업체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가맹점사업자가 직접공사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 시 공사견적금액에 대해 본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비용 부담 제외 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 경영사정 등에 의해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지원정책</th><th>주요 내용</th><th>지원조건</th><th>지원기간</th><th>지원금액</th></tr>
<tr><td>이디야
가맹점주 자녀
캠퍼스
희망기금</td><td>가맹점주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td><td>전국 이디야 가맹점주 자녀가 대학에 신입 입학한 년도에 지원 가능(해외대학은 입학 후 다음 해에 지원 가능)</td><td>해당 기금지원 공고(연 1회)</td><td>1인당 200만원
2024년 총 82명
1억 6400만원 규모</td></tr>
<tr><td>신메뉴
판매활성화
지원</td><td>시즌별 신메뉴 등 고객 프로모션 촉진 이벤트 지원</td><td>본부 주관 전사 행사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td><td>신제품 출시 시</td><td rowspan="4">소요비용 또는 물품 전액 당사 부담이 원칙임</td></tr>
<tr><td>판촉물
제작·지원</td><td rowspan="3">기본 매장 홍보물 무상 제작, 시즌 행사(크리스마스, 가정의 달, 설, 추석) 등 매장 방문 고객 프로모션 지원</td><td>본부 주관 전사 행사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td><td>가맹계약 기간</td></tr>
<tr><td>SNS 이벤트
판촉 지원</td><td>본부 주관 전사 행사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td><td>가맹계약 기간</td></tr>
<tr><td>고객참여
문화행사 지원</td><td>본부 주관 전사 행사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td><td>가맹계약 기간</td></tr>
</table>

※ 상기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지원정책의 내용, 범위, 조건, 기간,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 점포환경(고객, 입지, 업종) 조사분석과 계획 - 점포상황의 점검 및 개선 - 점포 설비 및 시스템 유지, 보수 - 가맹본부 정책 이행 관련 가맹점 상황점검 - 점주, 직원의 불만사항 접수, 해결 - 가맹점별 판매촉진 등 계획 수립 - 계약의 변경, 갱신 해지 등 매장 변화에 따른 설명, 교섭 등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영업팀 (02-543-6467)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영업팀 (02-543-6467)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오픈 1주년 기념 지원	가맹점 오픈 후 고객감사 행사 진행 시 판촉비용 지원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오픈일로부터 11~24 개월 이내 판촉행사기간동안	판촉행사비의 50%에 해당하는 물품 지원 (50만원한도)	

가맹점 청소 지원	가맹점 청소비용 일부 지원	별도 조건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지정업체에 필수 청소 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	연 1회	전체 청소 비용의 20% 지원	

※ 상기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지원정책의 내용, 범위, 조건, 기간,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이디야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이론+실습)	- 이론 : 커피이론, 노무, 위생, 서비스 - 실습 : POS사용법, 메뉴제조, 기기장비조작 - 현장 : 드림팩토리 투어, 직영점 실습	집단 강의 현장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이론 : 위생, 서비스 - 커피교육 : 신규 교육 내용과 동일	집단 강의 현장 실습	개점 후 필요 시	교육소환시 필수 이수 (단, 가맹점 자발 수강인 경우 선택)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이디야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이론+실습)	최소 7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 교육(이론+실습)	최소 4일	1,650	최초 계약 시 이수 (가맹본부 승인시)
보수 교육 (커피 교육)	최소 7일	275	가맹점 자발적 선택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신규 교육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 및 귀하의 가맹점 근무자에 한하여, 개점 전에만 최대 2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 신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상속, 증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점 전 신규교육을 설

령 1인만 받았다 하더라도 개점 후에는 소멸하며, 신규교육 비용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물류중단,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IBK 고객센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한남동, 1층)
2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1층 (여의도동)
3	서울	경희대캠퍼스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1층 호텔관광대학(회기동)
4	서울	학동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9, 2층(논현동)
5	서울	선릉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 지하1, 지하2층(역삼동, 에이치제이타워)
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본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1층(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7	서울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1층(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8	서울	IBK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지하1층(을지로 2가)
9	서울	서울의료원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1층(신내동)
10	서울	구로하버라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3길 6, 가온프라자 1층
11	서울	삼성금융연수원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23길 27
12	서울	용산중앙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2-1
13	서울	신논현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 에이프로스퀘어 1층
14	부산	부산송도해상케이블카점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171, 3층(암남동)
15	부산	부산달맞이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93, B동 1, 2층(중동)
16	경기	EBS1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통합사옥 1층 일부(장항동)
17	경기	EBS2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통합사옥 20층 일부(장항동)
18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점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카페테리아동 2층
19	전북	전북대병원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호흡기센터 내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3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98,71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1년 미만 6개월 이상 운영매장의 경우 1년 운영으로 환산하여 산정 기재한 것입니다. 해당 매출액은 직영점 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정책지원본부(02-543-646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필수 공급 상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2026. 01. 28. 기준

상품명	권장가격(원)	단위(oz)	가격 통보 방법
아메리카노	3,200/4,200	18/22/24	가격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달달커피	3,200/4,200	18/22/24	
제로슈가 달달커피	3,200/4,200	18/22/24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3,200/4,200	18/22/24	
꿀화이트 아메리카노	3,200/4,200	18/22/24	
카페라떼	4,200/5,400	18/22/24	
카푸치노	4,200/5,400	18/22/24	
카페모카	4,500/5,700	18/22/24	
카라멜마끼아또	4,500/5,700	18/22/24	
화이트초코렛모카	4,500/5,700	18/22/24	
바닐라라떼	4,500/5,700	18/22/24	
민트모카	4,900/6,100	18/22/24	
에스프레소	2,900	18	
연유카페라떼	4,500/5,700	18/22/24	
(에스프레소)디카페인 변경	500		
콜드브루	4,200/5,200	18/24	
콜드브루라떼	4,700/5,900	18/24	
흑당콜드브루	4,500/5,700	18/24	
연유콜드브루	4,900/6,100	18/24	
시그니처라떼	4,700/5,900	18/22/24	
아이스티(복숭아)	3,200/4,200	18/24	
아이스티(레몬)	3,200/4,200	18/24	
아이스티(제로슈가복숭아)	3,200/4,200	18/24	
아샷추(복숭아)	3,700/4,700	18/24	
아샷추(제로슈가복숭아)	3,700/4,700	18/24	
아망추(복숭아)	4,200/5,200	18/24	
초코렛	4,200/5,400	18/22/24	
민트초코렛	4,500/5,700	18/22/24	
토피넛라떼	4,500/5,700	18/22/24	
말차라떼	4,500/5,700	18/22/24	
화이트초콜릿	4,500/5,700	18/22/24	
미숫가루라떼	3,900/5,100	18/22/24	
흑당라떼	3,900/5,100	18/24	
버블흑당라떼	5,100/6,300	18/24	
달고나 라떼	4,200/5,400	18/24	
딸기듬뿍라떼	4,500/5,700	18/24	
딸기초코라떼	4,700/5,900	18/24	
말차초코라떼	4,700/5,900	18/24	
블루베리요거트플랫치노	4,900/6,100	18/24	
플레인요거트플랫치노	4,900/6,100	18/24	
딸기요거트플랫치노	4,900/6,100	18/24	
꿀복숭아요거트플랫치노	4,900/6,100	18/24	
초코렛칩플랫치노	4,700/5,900	18/24	
민트초코렛칩플랫치노	4,700/5,900	18/24	
토피넛플랫치노	4,700/5,900	18/24	

상품명	권장가격(원)	단위(oz)	가격 통보 방법
망고플랫치노	3,900/5,100	18/24	가격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꿀복숭아플랫치노	3,900/5,100	18/24	
유자몽플랫치노	3,900/5,100	18/24	
고구마라떼	4,500/5,700	18/22/24	
얼그레이	3,200/4,200	18/22/24	
캐모마일	3,200/4,200	18/22/24	
페퍼민트	3,200/4,200	18/22/24	
히비스커스	3,200/4,200	18/22/24	
루이보스	3,200/4,200	18/22/24	
로열밀크티	4,900/6,100	18/22/24	
아포가토	4,700	-	
딸기주스	4,900/6,100	18/24	
망고주스	4,900/6,100	18/24	
블루베리주스	4,900/6,100	18/24	
딸기바나나주스	5,400/6,600	18/24	
망고바나나주스	5,400/6,600	18/24	
블루베리바나나주스	5,400/6,600	18/24	
사과당근 클렌즈주스	4,200/5,400	18/24	
키위케일샐러리 클렌즈주스	4,200/5,400	18/24	
자몽차	4,500/5,700	18/22/24	
유자차	4,500/5,700	18/22/24	
레몬차	4,500/5,700	18/22/24	
쌍화차	4,500/5,700	18/22/24	
생강차	4,500/5,700	18/22/24	
배모과차	4,500/5,700	18/22/24	
복분자뱅쇼	4,900/6,100	18/22/24	
감귤레몬에이드	4,700/5,700	18/24	
자몽포멜로에이드	4,700/5,700	18/24	
머스캣모히또에이드	4,700/5,700	18/24	
샹그리아에이드	4,700/5,700	18/24	
꿀복숭아에이드	4,700/5,700	18/24	
밀크쉐이크	4,900/6,100	18/24	
초코쿠키쉐이크	5,100/6,300	18/24	
딸기 쉐이크	5,400/6,600	18/24	
에스프레소쉐이크	5,100/6,300	18/24	
말차초코쉐이크	5,400/6,600	18/24	
에스프레소샷 추가	500		
휘핑크림 추가	500		
(소스) 초콜릿 추가	300		
(소스) 카라멜 추가	300		
(시럽) 바닐라 추가	300		
(시럽) 카라멜 추가	300		
(시럽) 헤이즐넛 추가	300		
타피오카펄 추가	1,000		
초코렛칩 추가	500		
디카페인 콜드브루	4,700/5,700	18/24	
디카페인 콜드브루라떼	5,200/6,400	18/24	
디카페인 흑당콜드브루	5,000/6,200	18/24	
디카페인 연유콜드브루	5,400/6,600	18/24	
넛츠크림라떼	4,700/5,900	18/24	

상품명	권장가격(원)	단위(oz)	가격 통보 방법
살얼음식혜	4,500/5,700	18/24	가격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허니카라멜 브레드	5,600		
메이플넛 브레드	5,800		
프레즐	3,000		
플레인 크로플	3,300		
생크림 와플	3,200		
플레인 와플	3,000		
메이플 와플	3,500		
크림치즈 와플	3,900		
달고나아이스크림 와플	4,900		
오리지널 번	3,200		
플레인 베이글	3,000		
크루아상	3,500		
쌍쌍 츄로스	2,500		
소금빵	3,300		
수플레 치즈 케이크	5,000		
초코티라미수 케이크	5,000		
데블스초코 케이크	5,000		
우유생크림 케이크	5,000		
초코생크림 케이크	5,000		
떠먹는 티라미수	4,900		
플레인 치즈 스틱 케이크	2,600		
초코 치즈 스틱 케이크	2,600		
스노우쿠키슈	2,500		
초코렛청크 쿠키	2,500		
화이트초코마카다미아 쿠키	2,500		
크로크 무슈	4,800		
저당 제육 단백브리또	4,700		
저당 찜닭 단백브리또	4,700		
페퍼로니 피자 샌드위치	5,300		
에그 베이컨 과카몰리 샌드위치	5,300		
잉글리쉬 머핀	4,000		
매콤 로제 구운주먹밥	2,300		
까르보나라 구운주먹밥	2,300		
버터 팬케이크	4,500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베이글	4,800		
이디야이너츠	1,400		
이디야 워터	900		
(병)석류애플라임	3,000		
(병)유자피나콜라다	3,000		
(병)자몽네이블오렌지	3,000		
이디야키즈 뽀로로 사과매실	1,500		
이디야키즈 뽀로로 오렌지	1,500		
이디야키즈 뽀로로 포도블루베리	1,500		
이디야콤부차 복숭아망고	3,900		
이디야콤부차 청포도레몬	3,900		
이디야콤부차 석류애플라임	3,900		
사과 주스	3,000		
사과&당근 주스	3,400		
감귤&한라봉 주스	3,400		

상품명	권장가격(원)	단위(oz)	가격 통보 방법
비타민주스 믹스베리	3,300		가격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비타민주스 애플망고	3,300		
고구마 말랭이	3,000		
크리미초코 감자쿠키	2,800		
크리미피넛 감자쿠키	2,800		
미니코코 크런치	1,900		
미니프레첼 볶음양념맛	1,200		
초코프레첼 미니	1,500		
아이스콘 초코(봉)	500		
아이스콘 초코(케이스)	4,000		
제로슈가쿠키 스윗오트	2,800		
제로슈가쿠키 더블초코	2,800		
한입 쏙 크림치즈 베이글칩	2,700		
한입 쏙 피자 베이글칩	2,700		
단백질바 초코쿠키	1,400		
비타민바 그릭요거트	1,400		
(MD)자몽네이블오렌지	9,800		
(MD)제주청귤블라썸	9,800		
(MD)석류애플라임	9,800		
(MD TEA)스프링캐모마일	13,000		
(MD TEA)그린루이보스	13,000		
(MD TEA)샤인히비스커스	13,000		
(MD TEA)퓨어페퍼민트	13,000		
(MD TEA)프레시그린티	13,000		
(MD TEA)피치얼그레이	13,000		
(홀빈원두) 블루블렌드	14,000		
(홀빈원두) 에티오피아 레켐티	14,000		
(홀빈원두) 디카페인	16,000		
(드립)페르소나블렌드	3,700		
(드립)에티오피아리무	3,700		
(드립)콜롬비아슈프리모	3,700		
(드립)브라질세하도	3,700		
스페셜 모카블렌드 30T	5,400		
스페셜 모카블렌드 100T	14,700		
스페셜 골드블렌드 30T	5,400		
스페셜 골드블렌드 100T	14,700		
스페셜 아로마블렌드 헤이즐넛 30T	5,400		
스페셜 아로마블렌드 헤이즐넛 100T	14,700		
스틱커피 오리지널(20T)	4,700		
스틱커피 오리지널(80+20T)	16,400		
스틱커피 마일드(20T)	4,700		
스틱커피 마일드(80+20T)	16,400		
스틱커피 스페셜에디션(20T)	4,700		
스틱커피 스페셜에디션(80+20T)	16,400		
스틱커피 디카페인(20T)	4,700		
스틱커피 디카페인(80+20T)	16,400		
스틱커피 카페라떼(20T)	7,900		
스틱커피 바닐라라떼(20T)	8,900		
스틱커피 토피넛라떼(20T)	9,600		
(캡슐)멜로우 마일드	3,900		
(캡슐)인텐소 다크	3,900		
과육이 살아있는 제주 레몬차	5,000		

상품명	권장가격(원)	단위(oz)	가격 통보 방법
통생강을 갈아넣은 제주 생강차	5,000		가격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머그) 블루머그	5,000		
스텐머그(실버)	7,500		
엑스트라 콜드컵(아이보리)	19,000		
엑스트라 콜드컵(베이비블루)	19,000		
생분해성 커피 필터	5,900		
크림 전동 그라인더	35,000		
커피 드리퍼	12,000		
글라스 서버	12,000		
크림 드립 포트	19,000		
크림 드립 텀블러	33,000		

별첨 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주)이디야』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월 일 시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_____

3.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 년 월 일

4.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프로그램 ⑨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5. 제공한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 : ①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③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④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⑥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⑦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⑧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⑨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⑩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⑪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⑫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가맹희망자의 성명 : _____

7. 가맹희망자 주소 : _____

8.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 _____

9.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이디야 (인) 수령자 : (인)

간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주)이디야』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년 월 일 시

2.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_____

3.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년 월 일

4.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교육.훈련프로그램 ⑨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5. 제공한 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 : ①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③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④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⑥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⑦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⑧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⑨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⑩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⑪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⑫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가맹희망자의 성명 : _____

7. 가맹희망자 주소 : _____

8.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 _____

9.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이디야 (인) 수령자 : (인)